

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,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,

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「소방장비관리법」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·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장비의 고장 없는 안전한 활용을 통하여 소방 현장의 인명·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

<법제처 제공>

**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 
이에 공포한다.**

**대 통 령 문 재 인** 인

2018년 3월 2일

**국 무 총 리 이 낙 연**

국 무 위 원  
행정안전부  
장

**김 부 겸**

## ●법률 제15419호

###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“「항공법」 제2조제8호”를 “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”로 한다.

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”으로 한다.

-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**부 칙**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항공법」의 폐지·분법(分法)으로 “공항시설”의 정의가 「공항시설법」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,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·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